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특화 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특화 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1.3.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지원규모** : 1,530명 내외(일반분야 1,000명 내외 / 특화분야 530명 내외)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 창업교육, 전담멘토의 경영·자문서비스 등

2

일반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全 기술분야**

□ **지원규모** : **총 1,000명 내외**

○ 일반분야는 공고일('21.3.30) 기준,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선정 예정(청년 600명, 중장년 400명)

* **청년** : 만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1년 3월 31일 이후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1년 3월 30일 이전인 자)

< 일반분야 주관기관별(35개 기관) 예비창업자 지원규모(안) >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소재지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소재지
	청년	중장년			청년	중장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8	12	강원(춘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6	4	포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6	24	경기(성남)	건국대학교	18	12	서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15	10	경남(창원)	경기대학교	24	16	경기(수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2	8	경북(구미)	계명대학교	12	8	대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5	10	광주	대구대학교	18	12	경북(경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8	12	대구	동국대학교	18	12	서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5	10	대전	동아대학교	15	10	부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8	12	부산	부산대학교	15	10	부산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6	4	전남(나주)	성균관대학교	20	13	경기(수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36	24	서울	수원대학교	18	12	경기(화성)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2	8	세종	연세대학교	24	16	서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12	8	울산	인천대학교	18	12	인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7	18	인천	전북대학교	18	12	전북(전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5	10	전남(여수)	전주대학교	15	10	전북(전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2	8	전북(전주)	한밭대학교	16	11	대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9	6	제주	한양대학교	24	16	서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5	10	충남(아산)	호서대학교	21	14	충남(아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9	6	충북(청주)				

◆ **신청자 거주지, 창업 예정지 등에 관계 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21.4.19.월, 18:00) 후에는 신청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주관기관에서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창업교육 등 지원**

3

특화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주관기관별 특화분야 참조(하단 표)

□ **지원규모** : 총 530명 내외

○ 특화분야는 모든 분야에서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특화분야 주관기관별(13개 기관) 예비창업자 지원규모(안) >

특화분야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소재지
스마트관광	한국관광공사	30	서울
소셜벤처	벤처기업협회	100	서울
여성	한국여성벤처협회	100	서울
바이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0	서울
프로토콜 경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40	서울
자율주행	한국도로공사	10	경북(김천)
드론	한국임업진흥원	20	서울
그린경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	전북(전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0	서울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30	세종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한국특허정보원	40	서울
	한국발명진흥회	25	서울
인공지능(AI)	광주과학기술원	35	광주

※ [참고 1] 특화분야 설명 참조

◆ 신청자 거주지, 창업 예정지 등에 관계 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21.4.19.월, 18:00) 후에는 신청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주관기관에서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창업교육 등 지원

◆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 특화분야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시 창업아이템이 상이해야 함. 또한, 선정평가를 통해 일반, 특화분야 모두 선정되었을 시 1개의 분야(일반, 특화분야 중)를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함

5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 후 8개월 이내 ('21.6월 ~ '22.1월 예정)

<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p>☞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협약기간 : 8개월 이내)</p> <p>*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p> <p>*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p> <p>*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 비목정의 및 기준 ></p> <table border="1" data-bbox="344 772 1439 1671"> <thead> <tr> <th data-bbox="344 772 560 819">비목</th> <th data-bbox="560 772 1214 819">비목 정의</th> <th data-bbox="1214 772 1439 819">집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4 819 560 889">재료비</td> <td data-bbox="560 819 1214 889">•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td> <td data-bbox="1214 819 1439 1671" rowspan="10">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td> </tr> <tr> <td data-bbox="344 889 560 992">외주용역비</td> <td data-bbox="560 889 1214 992">•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992 560 1095">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td> <td data-bbox="560 992 1214 1095">•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095 560 1164">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td> <td data-bbox="560 1095 1214 1164">•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164 560 1234">인건비</td> <td data-bbox="560 1164 1214 1234">•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td> </tr> <tr> <td data-bbox="344 1234 560 1384">지급수수료</td> <td data-bbox="560 1234 1214 1384">•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td> </tr> <tr> <td data-bbox="344 1384 560 1453">여비</td> <td data-bbox="560 1384 1214 1453">•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453 560 1523">교육훈련비</td> <td data-bbox="560 1453 1214 1523">•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523 560 1626">광고선전비</td> <td data-bbox="560 1523 1214 1626">•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626 560 1671">창업활동비</td> <td data-bbox="560 1626 1214 1671">•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td> <td data-bbox="1214 1626 1439 1671">월 50만원 한도</td> </tr> </tbody> </table>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인건비 제외)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p>창업교육</p> <p>※ 40시간 교육이수 필수</p>	<p>☞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40시간) 운영</p> <p>*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선정 취소조치 (사전교육 일정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p> <p>*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교육(16시간), 심화교육(16시간)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조치 (일정 추후 안내)</p>																											
<p>전담멘토</p> <p>※ 선정자별 전담멘토 1인 필수 지정</p>	<p>☞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p>																											

□ **신청·접수기간** : 2021년 3월 30일(화) ~ 4월 19일(월) 18시까지*

◆ **유의사항**

- 1)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3)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별첨 양식)

* 사업계획서는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필요 시, 사업계획서 작성법 "K-Startup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URL_온라인 주소 :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K-스타트업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을 진행하여야 함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_해당 업무처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접수 마감(21.4.19.월, 18:00) 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세부 신청방법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예비창업패키지 일반 또는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해당 시) → ⑧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포함)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완료 → ⑩ 신청내역 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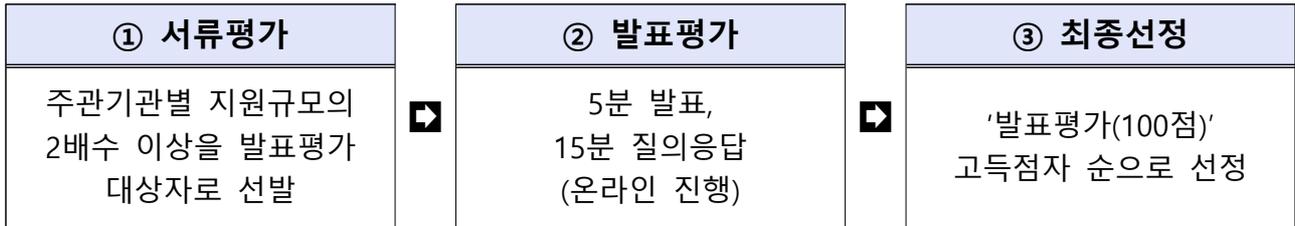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7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선정평가** ※ 평가일정·장소는 주관기관별 상이 (세부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세부 선정평가 과정 >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에 대해 서류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0년 실전창업교육 린-스타트업 과정 수료생, 도전! K-스타트업 2020 통합본선 진출팀에 대해 서류평가 면제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세부 면제 대상	기준
1) 실전창업교육 '린-스타트업 과정' 수료생 * '20년 실전창업교육 린-스타트업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의 시장성, 발전 가능성 등이 검증된 수료생	창업아이템은 동일하여야 하며 창업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주관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대상자 별도 안내)
2)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팀 * '20년 부처별 예선리그(혁신창업, 학생, 국방 등)를 통과한 통합본선 진출팀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의 경우 서류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 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 불인정

< 가점 항목(최대 4점) >

세부 가점 항목	점수
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2) 최근 2년 이내('19~현재)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참고 3] 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목록 참조 *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 창업경진대회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등 수상 증빙 제출 필요	1점
3) 고용·산업 위기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 [참고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 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예비창업자 가점 자격기준 참조	1점

평가지표 : 세부평가 지표*별 평가점수가 평가 배점의 60%에 미달 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1. 문제인식, 2. 해결방안, 3. 성장전략, 4. 팀 구성

< 선정평가 평가지표(안) >

세부평가	평가내용	배점	최소 득점기준
1. 문제인식 (Problem)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15점	18점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15점	
2. 해결방안 (Solution)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15점	18점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15점	
3. 성장전략 (Scale-Up)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10점	12점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0점	
4. 팀 구성 (Team)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20점	12점

※ 서류 및 발표평가의 지표와 배점은 동일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8

선정자의 의무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 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선정자 대상으로 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관련 온라인 교육 별도 진행 예정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창업아이템 개발을 완료 하고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단, 협약기간 이내)까지 [참고 5]의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 예정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와의 멘토링(월 1회 이상),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전담멘토가 협약기간 내 2개월마다 창업기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무실 조성·임차 현황, 직원 근무 현황, 구입 기자재 비치·활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함*
 - * 전담/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9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예비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2021년도 중기부 및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참고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 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함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0

기타 참고사항

◆ 2021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사업설명회 영상은 '21.4.5(월) 17시부터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청·접수 마감기간 까지 공개합니다.

□ 사업 문의

- 평가 관련 문의 : [참고 6]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연락처 참조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 1357)
- 기타 문의 : K-Startup(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상담하기

- **스마트관광** : 관광자원 및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교통·숙박·현지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소셜벤처** : 사회적 가치 창출과 실현을 주도하는 소셜벤처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여성** : 유망 기술창업 소재를 보유한 우수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바이오** : 생물체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생물공학 기술 바탕으로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프로토콜 경제** :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경제 모델을 구현하는 프로토콜, 핀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자율주행·드론** : 자율주행 및 드론을 통해 지능화 혁명을 이끌고 산업시장을 주도하는 무인이동체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그린경제** :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그린경제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D.N.A** : 안전한 데이터(D) 활용, 초연결 네트워크(N) 구축, AI(A) 확산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D.N.A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프리·포스트팁스), 창업기획사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업터 사업화 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단, 2017년(1, 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 또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만 지원받은 경우는 동사업 신청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참고 3

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목록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중소벤처기업부	<p>도전! K-스타트업 예선리그*</p> <p>* 학생리그, 국방리그, 관광리그, 여성리그, 혁신창업리그, A리그, 지식재산리그, 민간·지자체리그</p>	수상자
	<p>청청콘*</p> <p>* 청년 선배 스타트업 CEO가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p>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R&D 그랜드 챌린지	수상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수상자 (입선 포함)
	국제로봇콘테스트 & R-BIZ 챌린지(로봇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 공모전	수상자
	세라믹 신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수상자
국토교통부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해양산업 오션 비즈니스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행정안전부	<p>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p> <p>* 부처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예선)의 본선 대회에 한함</p>	수상자
금융위원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입선 포함)

참고 4**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예비창업자 가점 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인 예비 창업자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세분류(5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

번호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약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참고 5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안)

◆ **사회성 판별 점수와 혁신·성장성 판별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사회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1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100점	
2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3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70점	판별근기 입력
4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50점	
5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¹⁾ 되어 있고, 추진 ²⁾ 중인 기업	50점	정관 외 기타 증빙 ³⁾ 은 50%만 인정
6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50점	
7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²⁾ 하고 있는 기업	20점	
8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 ⁴⁾ 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20점	
9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 ⁴⁾ 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	20점	
10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10점	
11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점	2년 이상 5점 부여
12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5점	
13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 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5점	
점수 합계			점

구 분	3항 판별근기 입력
◆ 사회적 문제 ^{주1)} 해결	제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
◆ 제품·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 되었는지? ◆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근기를 간략히 기술(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 ^{주2)} ,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자가 직접 확인)

주1)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태

주2)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전문에 본 특허를 발명하게 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함

1)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2) 관련 증빙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점수 부여)

3)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4)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민간 조직에 해당함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 항목		점수	비고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점	
2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	100점	
3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점	
4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⁵⁾ 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50점	
5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⁶⁾ 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50점	
6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40점	1건 40점, 2건부터 건당 5점 추가
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⁷⁾ 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금액 ⁸⁾ 으로 확인	40점	
8	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⁹⁾ 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40점	
9	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¹⁰⁾ 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30점	
10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0점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10점
11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¹¹⁾ 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20점	
12	기업(또는 재단) ⁴⁾ 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	20점	
13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 ¹²⁾ 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0점	
14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10점	
점수 합계		점	

- 5)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NAB),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등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투자기관 단체의 회원일 것
- 6)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 7) 연구개발비 = 재무상대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 8)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 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 9) 글로벌 소셜벤처기업 경진대회(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갯인더링(Get In the Ring), GSEA(Global Student Entrepreneur Award) 등 1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를 말함.
- 10)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 11) K-스타트업(창업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글로벌리그) 또는 舊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본선이상 입상자, 지식재산 정보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수상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
- 12)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한 것임.

참고 6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연락처

일반분야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김예은	033-248-7961	kye@ccei.kr
	매니저	이혜경	033-248-7960	rud5907@ccei.kr
	매니저	정현석	033-248-7953	hnsk@ccei.kr
	사원	김종인	033-248-7951	jongin.kim@ccei.kr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이용길	070-4160-5821	reyong22@ccei.kr
	주임	신진아	070-4299-7806	jinah25@ccei.kr
	주임	최연주	070-4164-8203	cyju@ccei.kr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원	배한진	055-291-9384	bhj7832@ccei.kr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권수연	054-470-2633	sykwon@ccei.kr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김창섭	062-974-9354	wbhsb@ccei.kr
	전임	윤혜수	062-974-9656	yhs@ccei.kr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서영진	053-759-8136	syj@ccei.kr
	매니저	홍완기	053-759-8132	yghong@ccei.kr
	매니저	김용학	053-759-9658	kyh@ccei.kr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실장	서영하	042-385-0625	yurika3@ccei.kr
	과장	백상열	042-385-0664	bsy@ccei.kr
	주임	김재령	042-385-0582	kjr@ccei.kr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박기쁨	051-749-8952	pipiyo77@ccei.kr
	매니저	장한이	051-749-8977	hijang@ccei.kr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차장	원상희	061-345-8481	sanghee.won@kepco.co.kr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김상열	02-739-8167	sykim@ccei.kr
	매니저	박지민	02-739-9738	jmpark@ccei.kr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주임	김종현	044-999-0239	kjh0236@ccei.kr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임	이진경	052-222-9019	april416@ccei.kr
	주임	정미은	052-716-5144	me701ss@ccei.kr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이상철	032-458-5035	sclee@ccei.kr
	매니저	김성일	032-458-5031	sikim@ccei.kr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	김형수	061-661-1931	khs@ccei.kr
	선임	정구	061-661-1943	koojung@ccei.kr
	주임	박광훈	061-661-1932	hun210@ccei.kr
	주임	오주영	061-661-1923	ohju@ccei.kr
	사원	배다희	061-661-1925	bdh@ccei.kr
	사원	김정인	061-661-1934	jikim@ccei.kr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원	황동건	063-220-8947	hdg91@ccei.kr
	사원	이민정	063-220-8943	mj96@ccei.kr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임	이혜청	064-710-1932	leehc@ccei.kr
	전임	진유라	064-710-1921	yr1511@ccei.kr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실장	김재준	041-536-7812	kjjoon11@ccei.kr
	사원	박소연	041-536-7882	syp0703@ccei.kr
	팀장	김택한	041-536-7813	kth0246@ccei.kr
	전임	노서영	041-536-7830	nsy1587@ccei.kr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	홍성표	043-710-5921	moon222@ccei.kr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과장	김형준	054-221-6525	854410@posco.com
건국대학교	매니저	임문희	02-450-3347	moon85@konkuk.ac.kr
	매니저	박성희	02-450-4255	twinklehee@konkuk.ac.kr
	매니저	박대기	02-450-4256	eory1001@konkuk.ac.kr
경기대학교	팀원	전혜영	031-249-8702	startravel@kgu.ac.kr
	팀원	강한경	031-249-8702	khk0596@kgu.ac.kr
	팀원	우은정	031-249-8666	wej12@kgu.ac.kr
계명대학교	책임매니저	김영아	053-620-2045	kya@kmu.ac.kr
	매니저	이선명	053-620-2066	lsm0402@kmu.ac.kr
대구대학교	담당매니저	신다영	053-850-4373	sdym@daegu.ac.kr
	담당매니저	김세아	053-850-4389	s0248@daegu.ac.kr
동국대학교	매니저	김주미	02-2088-3737	startup@dgu.ac.kr
동아대학교	선임매니저	박수연	051-200-6365	yeony@dau.ac.kr
	매니저	정유나	051-200-6452	wjddbksk44@dau.ac.kr
부산대학교	선임매니저	박혜림	051-510-2994	parkhl@pusan.ac.kr
	선임매니저	송주연	051-510-1994	juyeon@pusan.ac.kr
	주임매니저	최지훈	051-510-1994	cjh5873@pusan.ac.kr
성균관대학교	매니저	한정우	031-290-5856	jjww@skku.edu
	매니저	추민정	031-290-5857	wjden30@skku.edu
	매니저	김현지	031-290-5850	hyeonji3@skku.edu
	매니저	이수정	031-290-5859	crystal88@skku.edu
수원대학교	선임	홍선영	031-229-8588	sidohae@suwon.ac.kr
	전임	김레구	031-229-8524	krq@suwon.ac.kr
연세대학교	매니저	최서린	02-2123-4414	seolin8004@yonsei.ac.kr
	매니저	박수현	02-2123-4413	spaark@yonsei.ac.kr
인천대학교	선임	유다울	032-835-9687	prestartup@inu.ac.kr
	선임	홍승아	032-835-9686	prestartup@inu.ac.kr
	매니저	정이삭	032-835-9649	prestartup@inu.ac.kr
전북대학교	팀장	곽효정	063-219-5467	my8318jh@jbnu.ac.kr
	매니저	김진경	063-219-5535	jiny9966@jbnu.ac.kr
전주대학교	선임매니저	허승	063-220-2846	hur0874@jj.ac.kr
한밭대학교	팀장	김태우	042-828-8671	twtw@hanbat.ac.kr
한양대학교	매니저	김하영	02-2220-2857	mindhaje@hanyang.ac.kr
	매니저	정아름	02-2220-2852	areumj@hanyang.ac.kr
호서대학교	과장	최성훈	041-540-9929	sh200106@hoseo.edu
	대리	김동민	041-540-9924	kdm7@hoseo.edu
	매니저	박형주	041-540-9934	starry@hoseo.edu

□ 특화분야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한국관광공사	대리	김인경	02-729-9466	venturepackage@knto.or.kr
	매니저	김영	02-729-9437	venturepackage@knto.or.kr
벤처기업협회	부장	박범준	02-6331-7121	bumjoonp@seoulvi.com
	과장	이재상	02-6331-7122	riskpw@kova.or.kr
	대리	김유영	02-6331-7123	yuyu@kova.or.kr
	매니저	이경은	02-6331-7125	lge@kova.or.kr
	매니저	김성득	02-6331-7127	david.kim@kova.or.kr
한국여성벤처협회	매니저	김민혜	02-3440-7472	mhkim@kovwa.or.kr
	매니저	오예니	02-3440-7476	ynoh@kovwa.or.kr
	매니저	심예진	02-3440-7464	yjsim@kovwa.or.kr
	매니저	이은서	02-3440-7491	eslee@kovwa.or.kr
	매니저	김유진	02-3440-7462	kyj@kovwa.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김정현	02-2095-1744	kimjh1950@khidi.or.kr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주임	이정은	02-6375-1535	jelee@fintech.or.kr
	주임	이승하	02-6375-1536	shlee@fintech.or.kr
한국도로공사	차장	전현수	054-811-3328	cap8801@ex.co.kr
	대리	이은혜	054-811-3329	eunhye@ex.co.kr
한국임업진흥원	선임	김효진	02-6393-2635	khj5133@kofpi.or.kr
	전임	이종흔	02-6393-2636	dexter@kofpi.or.kr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선임	한은송	063-219-3676	eshan@kcarbon.or.kr
	매니저	김나영	063-219-3656	nayoi@kcarbon.or.k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팀장	구본아	02-970-9023	bonah@seoultech.ac.kr
	매니저	임지민	02-970-9025	jimin@seoultech.ac.kr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주임	이정수	044-860-3816	ljs1004id@korea.ac.kr
한국특허정보원	대리	정수영	02-6915-1569	sooy@kipi.or.kr
	대리	박영혜	02-6915-1499	yhpark@kipi.or.kr
한국발명진흥회	과장	장인준	02-3459-2860	injun@kipa.org
광주과학기술원	대리	조혜민	062-715-6307	imhamin2@gist.ac.kr
	대리	손보영	062-715-6305	bysson21@gist.ac.kr
	대리	이윤미	062-715-6306	yoonmiii@gist.ac.kr

참고 7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업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